2022년도 제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2년 3월 24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임지원 위원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박 기 영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강 승 준 감사 박 종 석 부총재보

이 상 형 부총재보 이 정 욱 금융안정국장

홍 경 식 통화정책국장 박 영 출 공보관

한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최 문 성 의사팀장

박 종 현 커뮤니케이션기획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 <의안 제9호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

(1) 관련부서는「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제9조에 의거 금융중개지원 대출의 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설정하며,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021년 9월 9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도 유보분을 기존의 16.1조원에서 3조원 증액한 19.1조원으로 하되, 동 한도를 2023년 5월 30일까지 유지하고 2023년 6월 1일부터는 0.1조원으로 환원하기로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런데 이 같은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 연장조치 이후에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 방역조치 유지 등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부문의 업

황 및 자금사정 회복세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며, 향후 방역조치 완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취약부문의 부진이 완화되더라도 본격적인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였음.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안정화부문'의 미가동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점, 신성장·일자리지원프로그램 중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의 도입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효성이 다한 일부 상시프로그램은 금번에 종료하고, 코로나19 피해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한도 및 운용기한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3월 14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 과 같이 보고하였음.

위원들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운용기한을 연장하고 운용방식을 개선하는 등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것이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을 종전 2022년 3월말에서 2022년 9월말로 6개월 연장하는 한편,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해사실이 소명된 제조업체 지원을 허용하고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았으며, 아울러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연장을 위해서 한도 유보분의 운용기한을 6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이어서 위원들은 지원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이 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안정화부문 운용과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신규지원은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운용 종료를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 및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한도를 3.2 조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향후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중장기적 시계에서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합리적 개선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경제의 구조적·장기적

변화보다는 단기 충격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종류 및 한도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음.

# (3) 심의결과

### 의결문 작성·가결

### <의결사항>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는 현재의 43조원에서 3.2조원 감액한 39.8조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3.5조원에서 3.2조원 감액한 0.3조원으로 한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 및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 한도 유보분은 2023년 11월 30일까지는 19.1조원으로 유지하되, 2023년 12월 1일부터는 0.1조원으로 한다.

### <의안 제10호 - 2021년도 연차보고서(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102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정부에 제출 및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2021년도 연차보고서(안)을 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보고서의 경우 한국은행의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독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보고서 등의 홈페이지 수록자료와 연결된 URL과 QR코드를 수록하여 연차보고서가 한국은행 정보에 대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아울러 독자들의 관심이 높은 「경제 동향」 파트를 앞쪽에 배치하는 한편, 전체 내용을 통계숫자와이미지로 시각화한 '숫자로 보는 2021'을 수록함으로써 가독성을 제고하였다고 첨언하였음.

이어서 3월 17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들은 URL 및 QR코드 수록, 보고서 구성 조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보고서 내용이 대체로 잘 정리되었고 가독성도 높아졌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새롭게 신설되는 '숫자로 보는 2021'과 관련하여 앞장에는 2021년 경제여건을 보여주는 통계를, 뒷장에는 그에 대응하여 당행이 수행한 정책 내용을 수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I. 경제 동향'중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임금, 소비자물가, 주식시장 상황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그래프 및 설명을 추 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21년도 연차보고서(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2021년도 연차보고서(안)(생략)

### 나, 보고안건

## <보고 제21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21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보고내용: 별첨)

##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3월 16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에 대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체계적

으로 잘 분석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다만 보고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통계 의의 및 기준, 시계열 범위 등에 대한 보완 설명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최근 금융안정상황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동 사태로 인해 주요국의 금리인상 폭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금융시장 충격이 축소될 가능성과 같은 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한 일부 위원은 주요 이슈 중 '대외 충격 확산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취약성 점검 및 시사점'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복원력뿐만 아니라 자본손실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유동성 문제는 없는지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 분석 및 시사점'에서 대출금리 변 동폭뿐만 아니라 경기상황, 대출규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 내었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코로나19 전후 기업 금융지원정책 효과 분석'에서 기업 금융지원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한계에 대해서도 보다 분명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위원은 금리인하에 따른 시장안정 및 대출접근성 제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집단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과 관련한 풍선효과 등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위원들은 대출금리 상승이 자영업자의 유동성 상황에 미치는 영향, 자영 업자중 취약차주의 업종별 현황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하였으며, 앞으로도 면밀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과제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설명후 접수

(별첨)

# 「금융안정 상황점검」관련 보고내용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그간 코로나19 상황 지속에도 경기 회복세, 양호한 금융기관 건전성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지속

대외 여건 불안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 외환부문의 지급능력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양호

다만 민간부채 누증,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등으로 대출 부실위험이 이연·누적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내 잠재 취약성은 여전히 높은 가운데 금융안정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가중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빠르게 확대될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조 달·운용 여건이 악화되고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될 위험이 상존

특히 대내외 충격 발생으로 인해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부문의 신용위험이 현 재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대응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되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 노력을 병행할 필요

아울러 취약부문의 잠재 부실 위험 현실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을 보강할 필요